

2024.04.02.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4월 5일~4월 6일) 노무관리

1.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규정되어 있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사항

(1)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 시, 휴일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관련 규정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1)~2) 부분은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국회의원 선거 당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휴일근로수당 (*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을 지급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 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공민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사전투표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선거권 요청 시 그 시간을 부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근로자가 선거권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회사는 선거권 행사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선거일 이전의 사전투표일(4월 5일~6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 시	사전투표일 (4월 5일~6일)
• 법정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대체활용 불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대체/보상휴가제 활용 (* 근로자대표서면 합의 필요) • 공민권 행사 시 보장	•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공민권 행사 시 보장

㉠ 선거일 관련 노무관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 보장 관련해서 사업 장 재량으로 할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근무 시 휴일 관련 규 정 적용 → 휴일근로수당 지급 or 휴일대체/보상휴가제 활용
모든 사업장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가 필요하여 사전투표일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전 투표일에 선 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다면 선거권 행사 시간 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허용하여야 함. ✓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투표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사전준비·사후정리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서울지법 1993.1.19, 91가합19495)

㉠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
장하여 주어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65, B동 907호(갈현동, 상상자이타워)

주차 : 해당건물 B1~B4층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버스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소에서 도보15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2-6949-1227**
팩스 02-6949-167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rhanalaw.com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hrhanalaw.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hrhanalaw.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bin@hrhanalaw.com

이지은 공인노무사
wsl12@hrhanalaw.com